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6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9. 13.

발 의 의원 : 김길수의원 외 1인

1. 수정이유

군정자문위원회의 군정 발전방향과 정책개발에 대한 보다 전문가적인 자문과 제안을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2조(위원회 기능) 제6호를 삭제하고
-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토록 수정하였으며,(안 제3조)
- 안 제4조 제4항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
안 제10조(의견청취) 및 안 제11조(자료제출과 협조요구),
안 제14조(수당 등)제2항을 삭제함.

3. 기타사항

- 수정안 대비표 : 별첨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조 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·현직 교수, 전문연구원, CEO,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안 제4조 제4항, 안 제10조, 안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안 제14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기능) 자치 군정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창조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.</p> <p>1. ~ 5.(생략)</p> <p>6. <u>집단민원 및 장기 미추진 주민숙원 사업 등의 대책 제언</u>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2조(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(원안과 같음) (삭제)</p> <p>6. (원안 제7호와 같음)</p>
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지역개발, 환경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공공디자인, 법률,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·현직 교수, 전문연구원, CEO,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·현직 교수, 전문연구원, CEO,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
<p>② 위원회는 지역개발, 환경, 사회복지, 문화예술, 공공디자인, 법률, 건축 등 행정 각 분야에 대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전·현직 교수, 법조인 등 분야별 전문가, 기업체대표, 시민사회단체 임원, 일반 군민, 군 의원,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의회의원은 달성군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표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달성군의회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의회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해촉한다.</u></p>	<p>제4조(위원의 해촉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① ~ 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④ (삭제)</p>
<p>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에 응할 경우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한 때는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11조(자료제출과 협조요구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실·과·직속기관·사업소, 읍·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<p>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,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실·과·소·직속기관·사업소장, 읍·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12조(공청회 등) (생략)</p>	<p>제10조(공청회 등) (원안 제12조와 같음)</p>
<p>제13조(의결사항의 통보) (생략)</p>	<p>제11조(의결사항의 통보) (원안 제13조와 같음)</p>
<p>제14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의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</p>	<p>제12조(수당 등) (원안 제14조 제1항을 본문으로 변경)</p>

원 안	수 정 안
<p>범위내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을 군의 주요 행사, 축제 개최 시에 초청하여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15조(운영세칙) (생략)</u></p>	<p>(삭제)</p> <p><u>제13조(운영세칙) (원안 제15조와 같음)</u></p>

【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】

- 김길수 의원 외 1인 발의 -

서 명 날 인 서

의원명	서명	날인
김길수	김길수	
송성열	송성열	